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 7차 정기총회

일시 : 2015년 2월 26일 (목) 늦은 7시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순서

Ⅰ. 활동보고 3

Ⅱ. 감사보고 16

Ⅲ. 안건논의

1. 정관 개정안 승인 21
2. 임원 인선 및 승인 24
3. 2015 활동계획 26
4. 2014 결산 및 2015 예산 34

※ 정보공개센터 정관 38

Ⅰ. 2014 활동보고

2014년 총회 승인된 활동계획

주요 활동 목표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한 혁신 (Innovation)

① 정보공개로 SMART한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② 청년에게 응답하라! 2014

③ 정보공개로 바라본 문화정책 및 예술인 정책!

④ 방사능 및 원전 정보공개 심화

⑤ 박근혜 정부 "정부3.0정책" 진단

소통을 위한 관계 맺기 (Relation)

① 회원 만남을 통한 유대감 강화

- 치맥DAY, 회원 소풍, 회원 등산 등 소소해서 더 친밀한 회원 프로그램 강화

② 더 작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 유의미한 연대활동의 확대와 심화

③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센터 알리기

- 시민들과의 접촉 넓히기 위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방사능와치 홈페이지, SNS 적극 활용.

④ 시민 교육 및 홍보 강화

활동가가 행복한 정보공개센터 (Happiness)

① 조직의 혁신과 업무의 혁신으로 관성적인 활동을 탈피

-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후 자기계발 시간 체계화 및 확산
- 재충전을 위한 쉼 보장

②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 개인 기고 및 강의, 사업을 위한 연대활동 강화

③ 내규에 따른 활동가 상여금 200% 지급 현실화

④ 내부 업무 정비

- 칸막이 없는 업무, 능동적인 협업을 위한 업무체계 개선
- 기부금대상단체 재등록, 세무업무 체계화

■ *2014 활동 평가 (사업)*

1. 정보공개로 SMART한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 지역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동참 거절과 갑작스러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세월호 사건 및 선박안전 관련 집중 정보공개사업으로 전환함
- 이에 지방선거 관련 정보공개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고승덕의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평가작업,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문용린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및 정보공개를 통한 평가작업에 그침.
- 예상치 못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업전환으로 인해 적절한 현안 대처를 했다고 평가.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관한 활동이 저조했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통해 지방선거 당시 각 지역 후보들에게 지자체 정보공개 정책 제안

<관련 활동 내용>

2014/06/02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2014/05/30 청소년 전문가 자처한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 의원 시절 교육 관련 법안 발의는 고작 5건

2014/05/29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26년간 태만한 의정활동은 피할 수 없는 사실?

2. 청년에게 응답하라 2014!

- 2014년 3월 6일 청년유니온과 '청년, 정보공개로 권리 찾기'라는 이름으로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와 청년유니온 간의 사회적 협약 내용 모니터링, 최저임금 단속 현황, 청년 고용률, 지자체 청년정책, 대학문제 등 정보공개 및 관련 자료 분석
-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제공 & 청년유니온에서 관련 논평보도 방식은 기존 정보공개자료 공유보다 효과적으로 공유됨
- 청년유니온 측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논평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음(특히 언론의 관심)
-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유 과정에서 '청년'이라는 주제에 관심 있다는 어필을 한 계기가 됨
- 허나, 정보공개 청구 작업에 비해 관련 자료 공유가 부족했으며, 센터 내부에서 협약 이전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사업구상이 이뤄지지 못함.

- 사회 전반으로 '청년'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으나, 청년유니온과 업무협약 형태를 유지하면서 청년관련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2014/03/04 최저임금 위반 신고 2배증가!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은 감소?
2014/03/21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에 경제적 제재 강화를..
2014/03/26 2013년 청년 고용률 최하!!
2014/04/11 청년들의 빚잔치... 끝나긴 하는 걸까?
2014/07/23 근로감독 위반 업체는 수두룩, 근로감독관은 모자라..
2014/08/14 알권리 무시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도대체 무슨 일 하나?
2014/08/29 서울시 산하기관 표준이력서와 신체검사비용 지원현황

3. 아는 만큼 보이는 핵 발전과 방사능의 진실, 똑똑똑 노크해 주세요"

① 핵발전소 문제 알려내기

- 일본산수산물의 방사능검사와 어린이집 급식현황에 대한 문제제기 →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 움직임으로 확산됨
- 방사능방재관련(매뉴얼, 현황분석, 문제제기) → 지역탈핵대책위에서 방사능방재 논의진행. 다수 언론에서 방사능방재에 대한 기사 다룸.
- 경주핵폐기장 안전성 문제제기
- 원자력문화재단 강사파견, 견학사업, 언론홍보사업 문제제기 (녹색당 공동 성명서)
- 뉴스타파 '원전묵시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등 에너지와 기업회계, 정보공개 및 예산 전문 시민단체 5곳이 뉴스타파와 함께 원전산업 탐사기획보도

<뉴스타파 원전묵시록2014 기사>

- 원전묵시록2014 '페센하임과 고리'
- 사장부터 말단까지… 범죄 왕국 '한수원'
- [데이터 분석] 원전비리 업체 89곳, 한수원에서 2조 원 수주
- 1조 7천억 원자력 R&D 예산 누가 받았을까?
- 원자력문화재단은 교과서를 어떻게 바꿨나-데이터분석
- 교과서를 통제하라…핵피아의 '친원전 교과서 프로젝트'
- 원전입찰의 비밀…한수원과 업체의 '사전회의'
- 한수원, 입찰관련 내부문건까지 민간업체에 수시로 유출
- 원자력 관련 정부위원회와 기관장들의 재산은 얼마일까?
- 원자력 학계 '대부'들, 원전 기업 주식 무상 소유 드러나
- 주식 보유 교수들, 원전관련 공직 맡아 '이해상충' 논란
- 산업부,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 유출 19명 확인
- 다른 핵발전소도 수년 전부터 전산망 '구멍'
- "핵발전소 폭발위험 무시하고 수년 째 '무감압' 수소충전"
- "수소 유출사고 빈발해도 안전장치 요구 묵살"
- 원전 잠수사 올들어 3명 사망…한수원, 기본도 안 지켰다
- 삼자대면 : 핵피아를 찾아라!
- 퀴즈에 드라마에…원전 홍보비 무차별 살포
- 기사 1건에 천만 원…핵마피아에 기생하는 신문
- 원전 전산망 비번 공유… "한수원도 이미 알고 있었다"
- 원전묵시록2014, 핵마피아 실태분석 ② 한수원 출신 영입 46개 업체 중 78%가 원전 납품 급증
- 핵마피아 실태분석 ③"아직도 나는 한수원 본부장이다"
- 한수원 18조 납품 시장, 누가 많이 먹었나?
- 영광핵발전소 본부장 직위해제…비번공유, 대리결재 책임물어
-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 핵발전 에너지는 죽음을 담보로 한다"
- 정부는 보안구멍 '엄중 문책'… 한수원은 '제보자 색출'
-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 마음만 먹으면 원전 설계도까지…말로만 최고 보안시설
- 영광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 '무방비 배출첫 확인
- '핵피아', 그들만의 잔칫상…20조 원전 산업'

② 한-일 핵발전노동 워크샵

- 9월 21일 ~ 9월 25일 동안 2014 한-일 핵발전노동 워크샵 진행

<일본 초청인사>
나이쯔마 히데아키(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노동자)
나스비 (피폭노동을 생각하는 네트워크 활동가)
히쿠치 켄지 (일본 피폭노동자 탐사보도 사진작가)

<주요 일정>
9/22 노조간담회 (공공운수노조연맹 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담회
9/23 한- 일 핵발전노동 워크샵
9/24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원전 노동자 간담회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과특강 / 진토크쇼(히구치켄지)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수습, 제염노동자의 피폭 문제와 노동구조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먹거리와 오염수 유출등의 문제와 같은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편임.
- 영광 핵발전소 비정규노동자들의 강제해고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이전부터 핵발전소의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는 계속 존재해 왔음. 한국 핵발전 노동자의 문제인식이 '탈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노동자들의 피폭, 노동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음.
- 그런 의미에서 핵발전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문제화 시키는 것, 한-일 핵발전 노동자들의 만남은 유의미한 작업이었음.

<관련 언론보도 모음>
<참세상> 핵발전, 노동자 생명이 연료...피폭노동자 96%가 하청 한-일 핵발전 노동워크샵, "당장 생계 때문에피폭 노동"
<오마이뉴스> "목숨 걸고 일한 50만 원전노동자, 산재 인정은 단 13건" '포스트 후쿠시마, 한일 핵발전 노동자의 삶' 주제, 한일 핵발전 노동 워크샵 열려
<JTBC>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 방사능 제거작업 하루 만에 숨지기도"
<연합뉴스> 日 원전 노동자가 본 후쿠시마 "100% 안전 불가능"
<경향신문> "한국 원전 잇단 오작동·정지 조치 등 작은 사고들 큰 사고 가능성의 징후"
<세계일보> "日원전 안전은 허구… 후쿠시마 때 입증돼"50년간 원전 피해 실상 홍보 사진작가 히구치 겐지 내한
<매일노동뉴스>위험업무 도맡아 일본 떠도는 '원전 집시' 일본 원전 지탱하는 하청노동자들 … 피폭 기준치 넘으면 해고, 산재 보상도 못 받아
<한겨레21> 재앙은 닮았다.

③ 온·오프라인 아카이빙

- 방사능와치 : 2013년 9월 4일 이후 2013년 9월 4일 이후 현재(2015/1/15 기준) '방사능와치' 메인페이지 방문자수: 280,208명(1일 평균 메인방문자 수: 600명) 총 페이지뷰 수 : 13,967,466건 (1일 평균 페이지뷰 수: 27,000건)
- 누크노크 제작 : 2014년 1월 누크노크 제작, 배포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이루 '탈바꿈'으로 출판하게 됨.
- 탈바꿈 : 2014년 5월부터 기획하여 12월 출간하게됨. 21명의 필진이 참여하였고 누크노크를 함께 기획했던 장병인 이사가 디자인 및 인포그래픽을 담당함.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언론홍보, 조직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15년 2월경 오마이스쿨과 연속강좌 기획중.
-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정보, 이슈 및 알림사항, 전문가정보, 시민정보, 해외정보, 인포그래픽 정보들을 아카이빙하고 있으나 시민정보와 해외정보의 공유가 취약한 부분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해야 함.
- 방문자가 점점 줄고 있는 현재 홈페이지의 재구성이 필요함. 정보검색의 편의성 고려하고 아카이빙분류, 지속적인 아카이빙을 위해 자원활동가 등의 인적자원의 확보, 정보를 공유할 외적 조작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4. 제대로 된 정부3.0을 원한다

- 청와대의 정보공개처리 실태, 중앙부처의 정보 원문공개 비율 등에 대해서 살펴봄.
- 정보공개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감사청구 진행
- 정보공개/정부3.0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정책 및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
-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실태 분석은 각 지역운동단체들과 수행하고자 했으나 진행상의 차질로 분석작업을 수행하지 못함
- 단체 차원의 정보공개 정책 연구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 운동 전개 못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2014/11/21 청와대 사전공개정보는 어디에?
2014/11/13 정보원문공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2배 이상 차이나.
2014/06/27 정부3.0 핵심사업, 원문공개사업 성적표 보니?
2014/06/19 정보공개센터, 고용노동부 늑장 정보공개처리 개선하다!
2014/04/08 정부3.0주도하는 안전행정부의 빵점짜리 정보공개
2014/02/18 디지털 정부3.0 , 하지만 홍보는 아날로그

5. 세월호 관련 정보공개

-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선박 안전과 관련하여 기존 공개되어 있는 자료 분석하여 공유하는 활동 이어짐.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의 정보목록 분석 및 세월호 관련 모금활동 모니터링 작업 등에 집중
- 세월호 특별페이지 <세월호는 왜…> 구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2014/10/30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가족들을 외면했을까?
2014/07/08 해경청의 '세월호'없는 세월호 정보 찾기
2014/06/26 세월호 모금활동 얼마나, 어디에 쓰이나?
2014/06/16 항공안전 위협하는 관제사 '피로', 국토부 세월호 참사 겪고도 개선제안 무시?
2014/05/23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2014/05/22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부처 - 세월호 참사의 원흉은 인권을 잊은 정부다
2014/05/22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에 선령제한 규제완화 주장 보도자료
2014/05/14 선주협회, 해운조합 참여하는 해수부 위원회. 회의개최 0회.
2014/05/08 해수부 소관 공사도 전직 해수부 고위 공무원 많아..대통령실 낙하산도?
2014/04/30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2014/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사각지대 드러나!
2014/04/25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2014/04/25 여객선 해양사고 주요원인은?
2014/04/2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이제까지 분과회의 회의한적 한번도 없어.
2014/04/24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2014/04/24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2014/04/23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2014/04/22 1년에 1400만명 이용하는 여객선, 총체적인 점검 필요!(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수부감사결과)
2014/04/22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결과, 선박부실검사 드러나
2014/04/21 해양사고 원인 대부분 선원의 운항과실, 면허취소는 안돼..징계자 대부분 50~60대 노령
2014/04/21 해상 조난사고 2009년 부터 급증!
2014/04/18 세월호 사고 난 맹골도, 병풍도 인근해역 1년 평균 4회 조난사고발생!
2014/04/18 해양재난사고 안전관리체제 문제점 알고 있었던 정부, 왜 세월호 참사 막지 못했나?
2014/04/17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6. 은평 대안의회

- 선거 시기 투표에 머무는 정치참여를 넘어 일상적으로 구정(구청 및 의회)을 모니터하고, 모둠활동의 결과물을 지역주민과 소통함
- 은평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관심의제별 모둠 및 중간지원조직(멘토단)으로 구성하여 정보공개청구, 지방재정, 지방의회 모니터 방법론 및 관심분야 심화 교육
- 교육(5강), 구정모니터링, 의제모임(노동, 복지, 에너지), 은평누리축제 부스, 대안지도 제작, 매뉴얼 제작, 신문 발간
- 참가 단체 : 은평구초록길도서관/ 은평 민중의 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에너지정치센터
- 정보공개/예산분석/의회구조 등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다른 곳에서도 활용됨.
- 의정비 인상안과 견인차량 민간위탁 문제 등을 지역 내 의제화 하고 예산을 절감한 성과 얻음.
- 지원 : 서울NPO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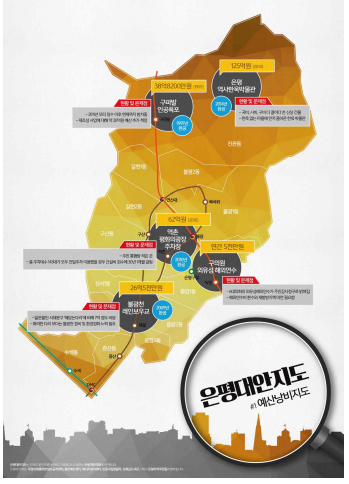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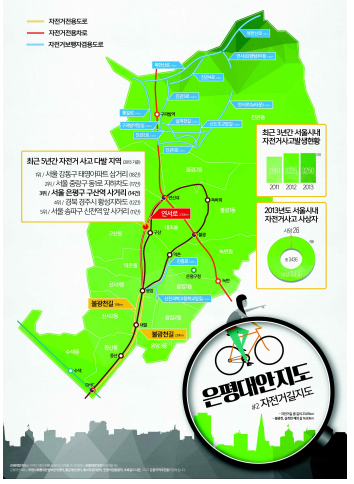

7. 소통을 위한 관계 맺기

① 회원 만남을 통한 유대감 강화

- 상반기 1회 신입회원의 날 / 하반기 1회 후원회원의 밤 행사 개최
- 신입회원모임을 상반기밖에 하지 못했고 초창기 회원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함. 회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기획필요
- 회원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회원 탈퇴율도 예년에 비해 늘어남. (5년이상된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나 회원관리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수 있음)
- 허나 활동가들의 외부 연대사업들이 증가해 회원으로 유입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음

② 더 작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유의미한 연대활동의 확대와 심화)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년유니온 등 연대활동을 맺고 있는 단위들과 실질적인 협력 이끌어내지 못함.
- 탈바꿈프로젝트를 통해 장병인이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 등과 실질적인 연대사업을 통해 좀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은평대안의회를 통해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치센터등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청구가 어떻게 교육되고 활용되는지 적용해 볼 수 있었음.

③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센터 알리기

- 지난 3년간 제작하지 못했던 정보공개센터 소개 브로슈어 제작(3분청구/정보공개는네모다)
-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정보공개센터 홍보영상 제작(내 삶을 바꾸는 정보)
- 제정적인 여건으로 인해 제작하지 못했던 브로슈어나 홍보영상의 경우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하였음.
- 홍보물 제작은 센터 활동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을것으로 판단됨
- 2013년 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이어왔던 언론 기고활동이 극히 저조했음. 언론 기고활동은 언론들과의 관계 및 정보공개센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므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④ 시민 교육 및 홍보강화

- 각자 활동가의 외부강의 등은 많이 진행하였으나 센터자체의 교육프로그램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8. 활동가가 행복한 정보공개센터

① 조직의 혁신과 업무의 혁신으로 관성적인 활동을 탈피

- 금요일 격주 출근이 자리 잡아 활동가 자기성장에 기여했고 외부적으로도 긍정적인 선례가 됨

②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2013년에 비해 다양한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참가함
- 사무국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프로그램 참여가 많았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③ 내규에 따른 활동가 상여금 200% 지급 현실화

- 2월/ 5월/ 9월/ 12월 상여금 각 50%씩 4회 지급

④ 내부 업무 정비

- 연초 월례회의를 기획 및 실행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 이는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요일 격주 출근제 및 활동가 각자가 외부 일정이 많아지면서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 사무국 업무에서 활동가 간의 협업을 도모하려 했으나 개인 프로젝트 형태가 많다보니 협업체계가 잘 유지되지 않은 부분 있음.
- 정기적 이사회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2,3,5,9,11월 진행) 이사들의 참여도 부족하여 앞으로 이사진 구성의 재편 및 소통의 방법 논의필요

■ 2014 활동 평가 (운영)

1. 사이트 운영

	opengirok.or.kr **방문자 300만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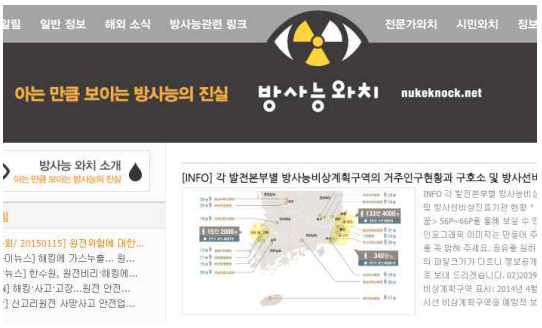	**방사능와치** **1일 평균 페이지뷰** **27,0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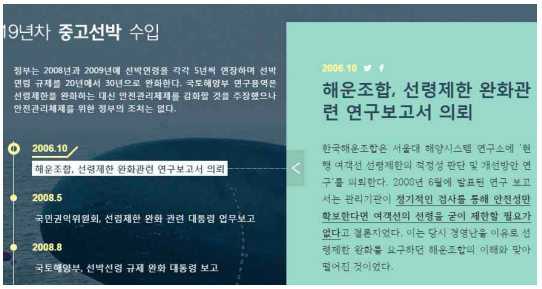	**세월호는 왜!**

2. 단체 운영

① 회원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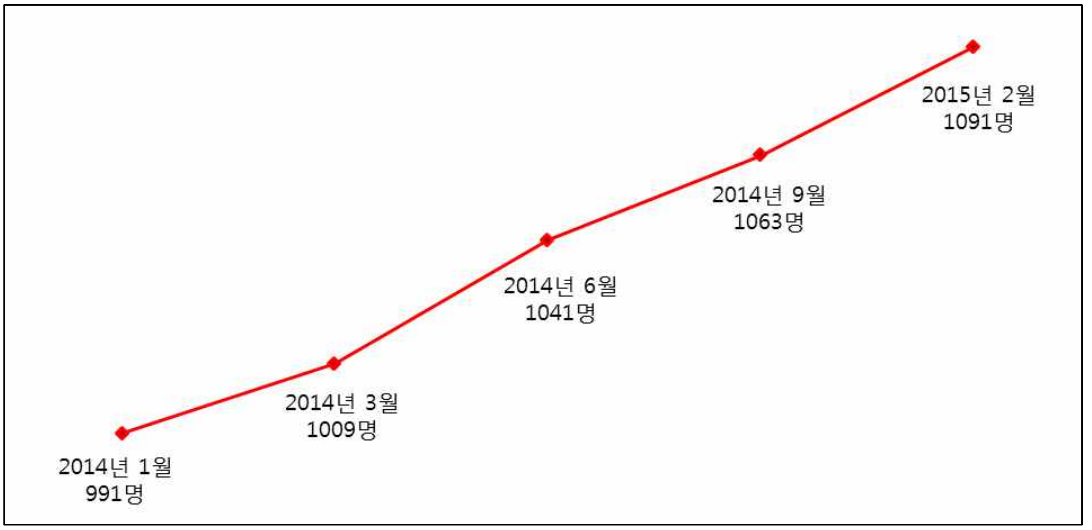

② 주4일제 업무 시작

- 2013년 4월부터 금요일 2시 퇴근제 시행. 이후 2014년부터 금요일 격주출근제로 변경.
- 2015년부터 주4일 업무제 도입

시민운동플랜B / 숨 막히는 활동, 그만두는 활동가_전진한
/ 주4일제 해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_정진임
/ 시민운동플랜B 컨퍼런스 주제강연

3. 정보공개센터 홍보 및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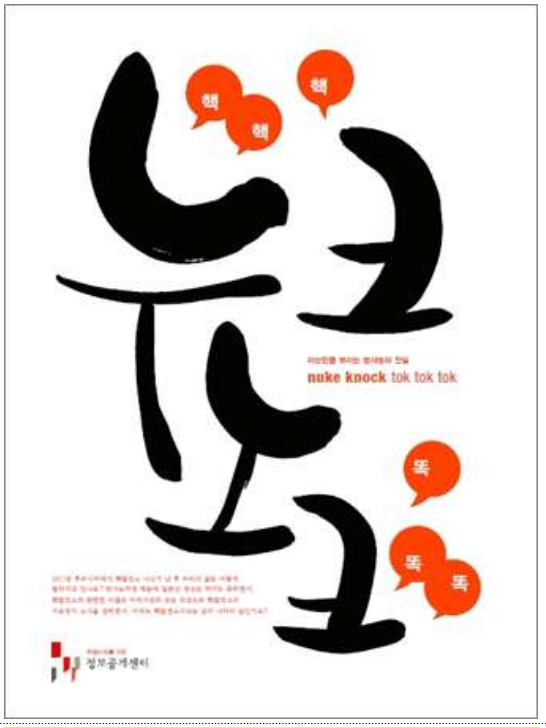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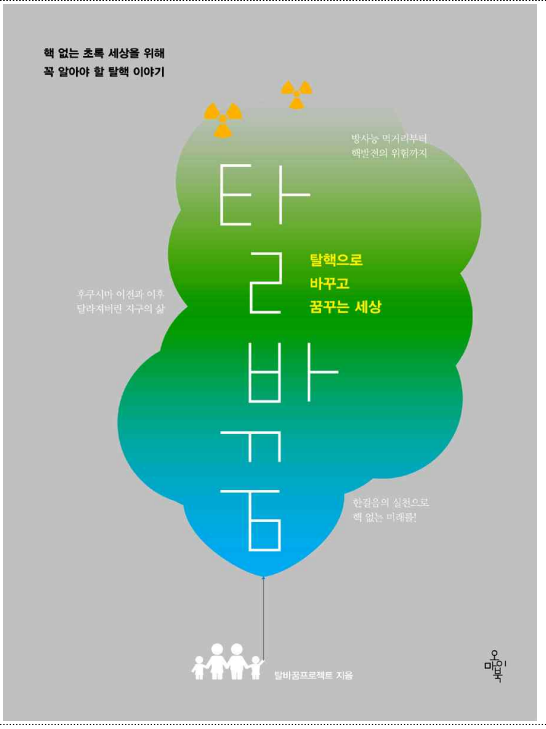

II. 2014 감사 보고

■ 사업감사

사업감사 : 정환봉

감사대상 사업기간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정보공개 활동

- 2014년 벌어진 '세월호 참사'로 센터는 선박 안전과 관련한 정보공개 활동에 주력했으며, 핵발전소 및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되게 진행해왔음. 이밖에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정책과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벌임.
- 반면 지난 총회때 의결한 지방선거 및 문화·예술인 정책 정보공개 활동은 세월호 참사 등의 이유로 수행되지 않았음.
-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박 안전 분야에 대해 발 빠르게 공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슈화하는 등의 활동이 돋보였음.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도 다수 이어졌음. 다만 공개 정보 분석 이외에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더 깊이 있고 끈질기게 분석하는 역할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아쉬움.
- 핵발전소 등과 관련해서는 일본산수산물의 방사능검사와 어린이집 급식현황에 대한 문제제기, <뉴스타파>와 원전산업 탐사기획 보도 등의 활동을 벌였음. 특히 한-일 핵발전노동 워크샵을 통해 원자력 문제에 대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연대와 교류의 장을 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언론 및 연대 활동

- 2013년 '정보공개센터'가 언급된 기사(네이버 검색 기준)는 총 758건이었음. 하지만 2014년에는 586건으로 줄어들어. 세월호 참사, 원전 관련 활동은 두드러졌으나 전반적인 언론 활동은 위축된 것으로 보임.
- 청년유니온과 '청년, 정보공개로 권리 찾기' 업무협약을 맺고 원전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을 진행하였음. 또 은평대안회의에 참여하면서 지역에서의 연대의 경험을 쌓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연대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 다만 여러지역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상적으로 연대하면서 문제의식과 경험을 공유 과정은 센터의 문제의식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처럼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사업화할지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더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회원 사업 및 센터 홍보 분야

- 2014년 2월4일 기준으로 누적회원 991명에서 2015년 2월23일 기준으로 1093명으로 증가함. 지난해 대비 102명의 회원이 신규 가입. 2013년~2014년 증가 회원 133명 보다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
- 지난 총회에서 치맥DAY, 회원 소풍 및 등산 등 회원 친목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나 재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또 1년에 3회 진행하기로 한 신입회원의 날도 1회에 그쳐. 행사를 기획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임. 하지만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
- 센터 홍보 부분에서는 3년만에 정보공개센터 소개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등의 진전이 있었음.

■ 센터운영

- 현재 센터 임원진은 대표 3명, 소장 1명, 이사 33명(대표 및 소장 포함), 사무국은 소장 1명, 상근활동가 4명으로 구성됨.
- 지난 총회에서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상여금 200% 지급 현실화 등을 계획했음.
- 센터에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금요일 격주 출근제를 시행하고 상여금 200% 지급이 현실화 돼 상근활동가 처우개선이 이뤄짐.
- 하지만 센터 이사회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함. 1달에 1번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는 5차례 밖에 열리지 못했음.
- 센터가 지난해 초 계획했던 상근활동가 월례회의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
- 매월 이사회 개최가 쉽지 않다면, 연간 개최 횟수를 줄이고 대신 내실 있게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 및 제언

- 짧은 기간에 센터가 회원 1000명 규모의 단체로 성장한 것은 눈부신 성과임. 하지만 최근 2년간 회원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같은 문제가 활동을 더 활발하게 벌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1000명은 상징적인 숫자이면서 직업적인 이유(기자, 전공자 등) 혹은 사회 참여의지가 높아 정보공개운동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일종의 '임계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사회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된 것 역시 센터의 노력이 지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이처럼 활성화 된 이후의 센터는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판단됨. 언론에 언급되는 빈도가 낮아지는 것 역시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전문성이 발휘될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물론 정보공개청구가 대중화되는 것은 센터가 지향하는 바임. 문제는 활성화 이전과 이후의 센터의 역할이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따라서 회원 1000명 시대를 연 2014년 이후 센터의 방향성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연대활동에 주력할 것인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중교육에 충실할 것인지 센터 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임. 이런 판단 속에서 새로운 성장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임.

■ 회계감사

회계감사 : 이재호

감사대상 회계기간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본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하 "정보공개센터") 가 제시한 제7기 (2014.01.01.-2014.12.31.) 운영에 대하여 담당직원과의 질문, 분석적 검토절차 등의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기 운영계산서는 정보공개센터의 당기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기 운영차액

당기 운영차액은 (-)5,812,586원으로, 그 내역을 운영수입과 운영지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수입

운영수입 합계금액은 195,067,774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역	금 액
일반회비	119,581,390원
후원금	23,960,000원
아름다운재단 사업지원금	19,500,000원
뉴스타파 사업지원금	24,000,000원
출판사업 수입	6,209,000원
기타수입	1,817,384원
운영수입 합계금액	195,067,774원

2) 운영지출

운영지출 합계금액은 200,880,36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역	금 액
임차료	13,326,000원
급여	132,268,790원
복리후생비	17,191,630원
운영 및 관리비	12,215,150원
아름다운재단 지원 사업비	14,700,000원
탈바꿈프로젝트사업비	4,677,000원
회원사업비	6,501,790원
운영지출 합계금액	200,880,360원

■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에서 당기 운영차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역	금 액
제1기(2008) 운영차액	26,101,517원
제2기(2009) 운영차액	709,419원
제3기(2010) 운영차액	(-)3,097,351원
제4기(2011) 운영차액	15,867,334원
제5기(2012) 운영차액	(-)497,110
제6기(2013) 운영차액	9,622,555원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	48,706,364원

따라서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 48,706,364원에 당기 운영차액 (-)5,812,586원을 합한 42,893,778원입니다.

Ⅲ. 안건 논의

■ *정관개정 승인 (조직구조 변경에 관한 건)*

1. 기존의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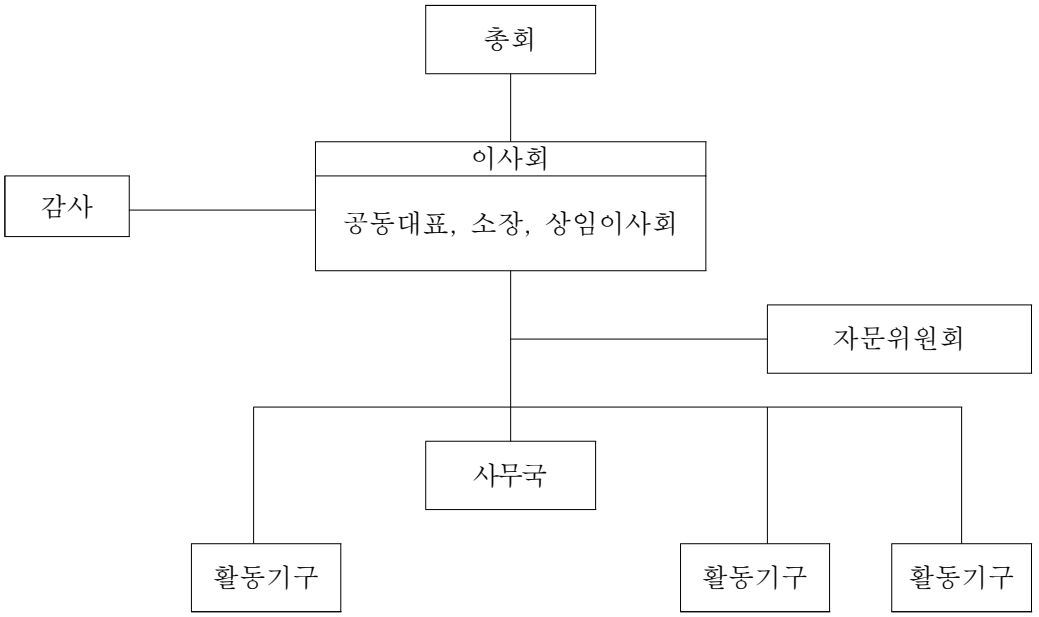

2. 조직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

① 정책/실행 기능 강화 필요

- 정보공개센터는 활동에 있어서 '상근활동가들의 선 집행 이후 이사회의 후 결재'를 하는 방식임. 하지만 센터 활동이 확장되면서 노동력 및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사업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해 사무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선집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음.
-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국의 자체적 역량만으로 실행하기 어려워 이사진 및 회원과 사무국간의 긴밀한 연계로 사업들을 진행해 왔음. 이 과정에서 일부 상임 수준의 결속력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이사 및 회원이 요구됨.
- 일상적으로 사무국과 접촉해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실행하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사무국에서 온전히 커버할 수 없는 정책역량 및 대외활동에 대한 이사 및 회원들의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이 필요함.

② 이사회 운영에 대한 변화 필요

- 현재 창립 이후 매월 1회의 이사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 이유는 단체 창립 시기 단체를 만들어가고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사들과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임. 센터의 상황이 창립 당시와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걸맞게 이사회 역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
- 또한 센터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사회의 경우 각자의 사정으로 회의참석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함. 2014년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5회만 개최된 바 있음.

3. 조직구조 변경 제안

- 기존의 이사회를 상임이사회와 운영이사회로 구분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이사회를 투트랙으로 나누어 명칭과 역할을 구분하는 것 보다는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및 전문가 그룹을 센터 활동의 실무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논의 과정
- 2014. 12.9 제 1차 임원인사위원회
- 2015. 1. 12 제 2차 임원인사위원회
- 2015. 1월~2월 10여 차례의 사무국 회의

-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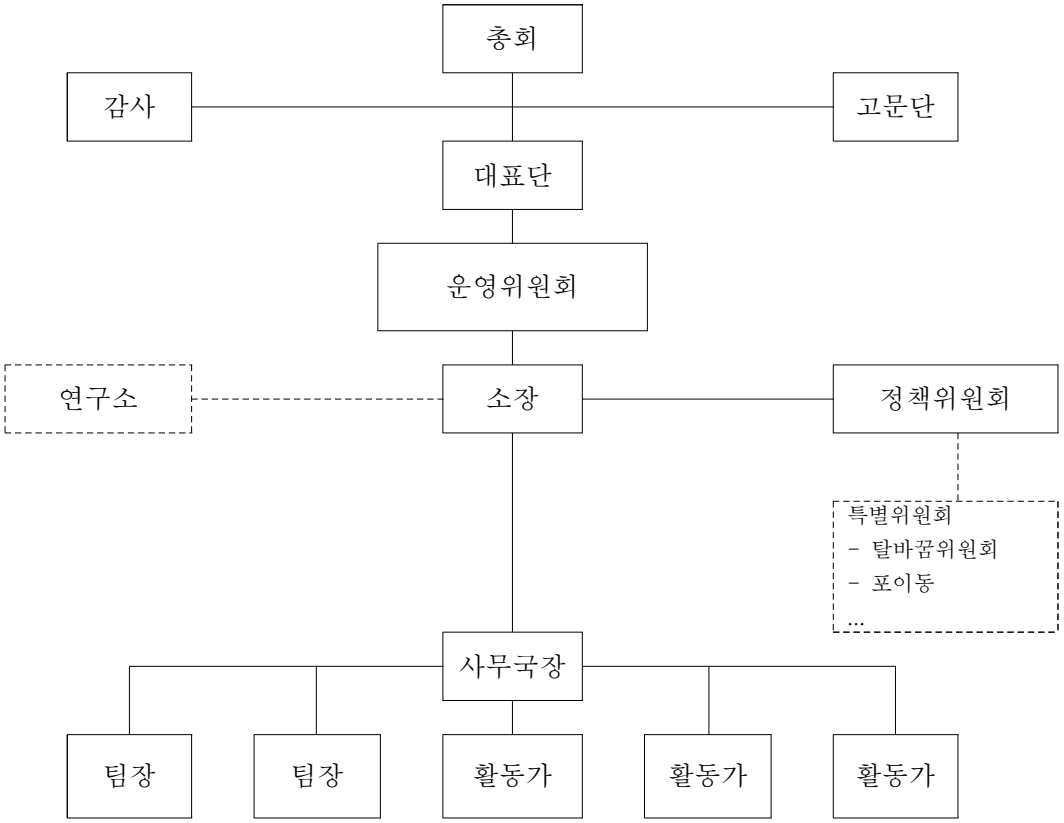

- 전직 대표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고문단을 구성한다.
- 기존 이사회를 해소하고 이의 역할과 기능을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단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운영위원회”는 정보공개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연 4회 정기 회의를 갖는다. 단, 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정책위원회”는 운영위원과 전문가 중에 소장이 위촉한다.
- “정책위원회”는 따로 위원장을 두지 않고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정책위원회”는 정보공개센터 활동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지원한다.
- 정책위원은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매월 운영하는 확대사무국회의 참여한다.
-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사무국 산하에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운영애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자료집 [정관 개정안] 참고

■ 임원인선 승인

* 57차 이사회를 통한 임원 추천안

■ 고문

- 김영희(정보공개센터 전 대표. MBC PD)
- 서경기(정보공개센터 전 대표, 여울교회 목사, 한아봉사회 사무총장)

■ 대표

- 이승휘(정보공개센터 대표. 명지대 기록과학전문대학원 교수)

■ 운영위원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혜진(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 김여선(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용진(뉴스타파 대표)
-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도류(불도암 주지스님)
- 민경배(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 박동진(국제사이버대 웰빙귀농학과 교수)
- 설문원(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성재호(KBS 기자)
- 성창재(변호사)
- 신동호(경향신문 기자)
- 양리리(서대문 도서관 친구들 대표)
- 이경득(새한상사 대표)
- 이상미(경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소연(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이승휘(대표겸직)
- 이종필((사)마을 활동가)
- 장병인(How's 컨설팅 대표)

- 장유식(변호사)
-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전 소장, (가)바꿈 사무처장)
- 정창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한학수(MBC PD)
- 홍일표(더미래 연구소 사무처장)

-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전 자문위원)
- 박상호 (정보공개센터 전 자문위원)
-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 안기석 (정보공개센터 전 자문위원)
-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활동가)
- 이도훈 (배움 여행자)

■ 정책위원

김유승, 김형완, 민경배, 백우연, 성창재, 신동호, 이강준, 이상미, 장병인 전진한, 최정민

■ 2015 활동계획

주요 활동 목표

<u>끈질긴 정보공개센터</u>

① 박근혜정부 알권리 중간평가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 모니터링
③ 정보공개제도 개정
④ 악의적 비공개, 주요한 위법적 비공개에 대한 소송
⑤ 정보공개 사각지대 파헤치기
⑥ 핵마피아보고서 제작 및 탈바꿈 연속강좌
⑦ 방사능와치 재정비 및 원전/탈핵 정보 공유 및 DB화

<u>공부하는 정보공개센터</u>

① 정보공개 정책/연구 기능 강화
- FOI(Freedom Of Information)동 연구모임 체계 재정비
- 알권리 동향 및 연구내용에 대해 정규 칼럼 기획
- 민/관 정보공개 사례 공유 컨퍼런스 진행
② 찾아가는 공터학교
- 센터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터학교 재개
- 찾아가는 공터학교 진행

<u>함께 가는 정보공개센터</u>

① 연대 활동
- 정보공개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MOU
- 은평대안의회 활동
- 지자체 대규모국제대회 추진 예산낭비방지 대책위 활동
② 회원활동
- 회원 인터뷰 정례화
- 회원 소모임 (방바닥 극장) 진행
③ 가치 있는 활동 같이 하자
- 소규모 단체 및 활동공간에 사업비 지원
④ 정보공개 네트워킹

1. 박근혜정부 3년. 알권리 중간평가

1) 목적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한 맞춤형 정보공개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 3.0' 이 추진되었음. 이에 현재 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포털 등이 모두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원문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공개포털 개편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되려 안정성이 저하되었음. 원문공개서비스의 경우 검색 및 정보 취득이 더욱 불편해 짐. 또한 이 점을 악용해 실제 생산 및 등록 정보가 원문공개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등 '정부 3.0'의 문제점과 정보은폐 경향이 드러남. 여기에 정부의 권위적인 성격이 더해져 실제로 정보공개제도가 일종의 한계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에 현재 '정부 3.0'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비판하고 기존 제도 급진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이 불가피함.

2) 사업내용

① 악의적 비공개, 또는 주요한 위법적 비공개에 대한 소송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하며 악의적 또는 위법적 비공개 처분을 받을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 검토 후 소송을 진행해 악의적·위법적 비공개 행위를 위축시키고 정보공개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생산함.

악의적·위법적 비공개	→	정공센·진보넷 소송 대응	→	악의적 정보은폐 위축. 생산적 판례 생산

②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MOU

보다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에 정보공개센터에 진행해 온 주된 사업방식

정보공개청구 -> 정보취득(또는 비공개) -> 분석 비판 -> 언론보도

에서 한시적으로 탈피 입법, 사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근 법률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MOU 형태의 강력한 연대를 구성함.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 모니터

-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항시 위반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ex: 사전공표정보 미공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등)
- 따라서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의무를 목록화 하여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필요함.

④ 정보공개법 제도 개정

▷ 정보공개법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마련

- 현재 김민기 의원(새정연)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위변조 공개 시 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의안으로 제출함으로 정보공개법 제정 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처벌조항의 실질적 입법시도가 이루어짐. 이는 국회 일각에서도 처벌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하나의 작용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도 정보공개법 위반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처벌조항을 디자인해 입법화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정보공개청구서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화

- 지난해 11월부터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함. 이는 정보공개법 청구서 작성시 주민번호 수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근거함. 해당 법률에 대한 폐지를 담은 개정안 작업이 필요함.

▷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및 정보 가공에 대한 범위 제도화

- 공개정보의 가공을 하면 안된다는 근거를 들어서 청구정보의 보유를 여부 확대 해석해 정보부존재를 남발하는 경형이 있음. 또한 정보부존재 결정 시 종결처리로 되어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거치기가 매우 어려워 짐. 해당 내용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2. 포이동으로 모여라- 정책연구기능 강화

1) 목적

- 박근혜 정부 취임과 함께 정부3.0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개방/공유/소통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대통령실을 필두로 한 현 정부의 소통의지나, 실제 구현되는 정부3.0 정책의 수준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중앙정부의 정부3.0 정책평가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정보공개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또한 정부3.0 근본 취지에 맞는 대한 제시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현 정부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 단발적으로만 이뤄졌던 현 정부의 정보공개실태 및 정부3.0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 <박근혜정부 알권리 중간평가>리포트 발표
- 정보공개센터에서 정책분석 및 제도연구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연구모임 FOI동>의 체계와 위상을 재정비 해 센터 내에 공식화하고 알권리 동향 및 연구내용에 대해 온라인 정규칼럼을 기획
- 민관의 정보공개 정책 및 사례를 나누는 정보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함
- 알권리 동향 및 정책연구내용을 무크지 형태로 온라인 발간

3. 정보공개 사각지대 파헤치기

1) 목적

- 권력기관일수록, 정보공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며 실제 비공개율도 높은 게 현실임. 대표적인 예가 중앙행정기관의 가장 상위에 있는 청와대임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 이 외에 많은 사립대학과 2013년도 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포함된 연간 5000만원 이상 지원받는 민간단체 등은 스스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상당함.
-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 실태조사 등을 벌여 정보공개 사각지대에 대한 공개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또한 대학교육연구소 등과 연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 캠페인을 진행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진행함.

2) 사업내용

① 청와대 알권리 침해 공식 대응

- 공개정보 내용 미흡, 폐쇄적인 정보공개 창구, 자의적 비공개 등 알권리 침해가 잦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 정보공개 관련 소송 진행

② 사립대학 정보공개 캠페인

- 사립대학의 정보공개 실태, 사전공개 범위, 정보공개창구 마련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학생/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립대학 대상 정보공개캠페인 진행.
- 대학교육연구소 등 대학문제 전문단체와 함께 사립대학의 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공개 캠페인 및 이슈파이팅 진행

4. 찾아가는 공터학교

1) 목적

- 활동가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공개센터 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임
- 센터 내외부에서 교육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왔음
- 최근 2년간 진행되지 못했던 공터학교 진행할 필요 있음. 기존 센터에서 진행했던 공터학교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찾아가는 공터학교를 진행함.

2) 사업내용

- 교육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위해 공터학교 전담 활동가 배치
- 센터 회원 및 일반 시민, 협동조합/대안학교/시민사회단체 등 조직되어있는 단위들과 함께 4강~6강 내외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탈바꿈 프로젝트

1) 목적

- 2013년, 2014년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탈바꿈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음. (온라인 사이트 '방사능와치'개설과 인포그래픽작업을 바탕으로 '누크노크' 및 '탈바꿈'출판, '한-일 핵발전노동 심포지엄', '원전묵시록2014'탐사기획 등)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하던 탈바꿈 프로젝트를 센터의 역량과 활동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함.

- 정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탈핵운동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되고 있고 핵발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함.
-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핵발전정책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탈바꿈프로젝트의 활동을 지속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사업내용

① 출판 및 연속강좌

- <핵마피아 보고서> 제작: 자료집제작 및 출판
- 연속강좌: 오마이스쿨, 녹색당과 공동주최하여 연속강좌 진행
- 도서 <탈바꿈> 재홍보

② 방사능와치 재정비: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성. 카테고리 재분류, 아카이빙 툴 검토 / 공동으로 웅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단위 모색

③ 에너지데이터센터(가): 에너지- 탈핵 정보의 공유, 공동기획사업 진행할 네트워크 논의

④ 원전묵시록2014작업의 DB화: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DB화 하여 이후 후속작업이 가능하게 함. 상반기 중으로 작업완료

⑤ 정보공개청구내용

- 지속적인 핵카르텔 모니터링
-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방사능방재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현황분석
-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 관련 사업 모니터링 및 반원자력문화재단 사업 기획(탈핵백일장, 탈핵공모전)
- 경상북도에서 진행 중인 원자력클러스터사업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슈화하기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6월) 및 원전R/D관련 정보공개청구
-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등 원전사업자, 규제조직, 중앙정부의 악의적 비공개건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감사청구

6. 회원과 함께 가는 정보공개센터

1) 목적

- 센터는 그간 관계가 밀접한 회원 중심으로 소통해왔는데, 신규 회원 및 보지 못한 회원들과도 소통할 필요 있음.
- 소식지 인터뷰의 경우 후원의밤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활동가와 친분이 있는 회원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소식지 인터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과의 접촉면적 확대
- 전면적인 조직개편내용이 제대로 정착도록 조직 및 회의 체계를 안정화시켜야 함.
- 주4일 출근제 시행으로 인한 소통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체계 재정비함
- 주4일제 출근 시행과 발맞춰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 자기계발 지원 확대

2) 사업내용

- 회원관리 : 신입회원 감사 전화, 기존 회원 문자 인사
- 에너지있수다 : 회원 인터뷰 강화. 온/오프라인 인터뷰 결과를 격주간 소식지에 게시
- 회원 소모임 진행 : 매월 1회 방바닥 극장 열어 회원들과 영화 보기 모임 진행
- 월 중 하루, 회원과 소장과의 만남의 날 진행

7. 세상과 함께 가는 정보공개센터

1) 목적

-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알권리 관련 활동 간의 네트워킹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개별적인 사안별로 정보공개 파트를 담당해 연대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알권리 차원에서의 네트워킹 작업은 그간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7년차를 맞이하며 조직 및 사업 부분에서 어느정도 안정적인 구조를 찾아가고 있음. 센터 창립시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대와 중간지원조직들의 지원이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함.
- 정보공개센터가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활동 단체들과 연계하여 작은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함.

2) 사업내용

- 같이 가치 사업 공모 : 연간 두 개 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모를 통한 사업 지원
- 은평대안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정보공개교육 매뉴얼 개발
- <지자체 대규모국제대회 추진 예산낭비방지 대책위> 정보공개 관련 활동

※ 월별 사업계획

사 업 명 \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박근혜정부3년. 3.0 중간평가	소송											
	진보네트워크센터 MOU											
	정보공개법 모니터											
	제도개정											
정책연구기능 강화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정보공개 컨퍼런스											
	무크지 발간											
	칼럼 기획											
정보공개 사각지대 파헤치기	청와대 정보공개 대응											
	사립대학 정보공개											
탈바꿈프로젝트	방사능와치											
	탈핵강좌											
	DB구축											
	핵발전 노동 실태조사											
	에너지데이터센터(가)											
	자료집 제작/ 출판											
	캠페인사업											
	정보공개											
공터학교	찾아가는 공터학교											
	센터 진행 공터학교											
	교육콘텐츠 준비											
회원 활동	소모임 (방바닥영화제)											
연대활동	같이 가치											
	알권리 네트워킹											

■ 2014 결산 및 2015 예산

1. 2014년도 예산 및 결산

2014년 예산				
月 수입기준	年 수입기준	계정과목	月 지출기준	年 지출기준
10,000,000	120,000,000	회비		
2,600,000	31,200,000	후원금		
2,500,000	30,000,000	사업비지원(뉴스타파+a)		
1,625,000	19,500,000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1,625,000	19,500,000
250,000	3,000,000	5.18재단 지원사업	250,000	3,000,000
		급여(4대보험, 퇴직급여 포함)	10,600,000	127,200,000
		복리후생비	1,200,000	14,400,000
		내부사업비	939,500	11,274,000
		운영 및 관리비	1,250,000	15,000,000
		임차비	1,110,500	13,326,000
203,700,000		총계	203,700,000	

2013년 대비 2014 결산				
수입		계정	지출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1,113,521	1,817,384	기타수입		
114,517,250	119,581,390	회비		
28,668,000	23,960,000	후원금		
21,500,000	19,500,000	재단지원금 (5.18재단/아름다운재단)		
25,000,000	24,000,000	사업비지원금 (뉴스타파/시사저널)		
	6,209,000	출판사업 (탈바꿈)		
		급여 (퇴직급여,4대보험 포함)	121,412,550	132,268,790
		임차비	13,326,000	13,326,000
		사업비 (내부/아름다운재단/5.18재단)	23,880,597	21,201,790
		탈바꿈 사업비		4,677,000
		운영 및 관리비	11,288,640	12,215,150
		복리후생비	10,485,853	17,191,630
190,798,771	195,067,774	계	180,393,640	200,880,360

2.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운영통장 기준)

<수입>

	총수입	CMS후원	자동이체	후원금	사업지원(후원)	탈바꿈	잡수입
1월	16,652,435	9,601,235	50,000	200,000	6,800,000		1,200
2월	13,348,270	10,102,270	70,000	330,000	2,000,000		846,000
3월	12,488,153	9,594,475	60,000		2,000,000	825,000	8,678
4월	11,733,530	9,579,530	50,000		2,000,000	104,000	
5월	12,112,980	9,698,980	60,000	200,000	2,000,000		154,000
6월	12,227,312	9,957,875	70,000		2,000,000		199,437
7월	12,077,215	10,007,215	70,000		2,000,000		
8월	12,034,525	9,834,525	50,000		2,000,000		150,000
9월	11,837,920	9,760,790	70,000		2,000,000		7,130
10월	32,896,335	9,946,335	60,000	20,450,000	2,000,000		440,000
11월	20,707,760	10,647,760	30,000	2,750,000	2,000,000	5,280,000	
12월	12,251,339	10,180,400	30,000	30,000	2,000,000		10,939
계	180,367,774	118,911,390	670,000	23,960,000	28,800,000	6,209,000	1,817,384
재단 지원					14,700,000		

※ 아름다운재단 지원 19,500,000원 중 4,800,000은 운영비지원으로 14,700,000원은 사업비로 쓰임

<지출>

	총계	급여	퇴직금	4대 보험	임차비	내부 사업비	탈바꿈	복리후생비	운영비						
									계	사무 용품비	여비 교통비	지급 수수료	잡비 지출	회의비	교육 및 워크샵
1월	16,192,500	8,913,160		1,474,480	1,110,500	55,000		3,700,850	938,510	49,000	117,660	513,350	100,000	68,000	90,500
2월	14,017,030	8,963,160		1,483,300	1,110,500	1,409,100		116,100	934,870	5,400	210,920	327,390		321,160	70,000
3월	13,024,340	9,008,150		1,483,300	1,110,500	106,200		191,430	1,124,760	56,300	53,800	569,460		375,200	70,000
4월	12,452,690	8,686,990		1,483,300	1,110,500			171,500	1,000,400	131,270	158,200	440,930	200,000		70,000
5월	17,064,380	8,989,040		2,229,220	1,110,500			3,586,000	1,149,620	62,600	163,940	349,080	30,500	337,000	206,500
6월	13,554,570	8,989,040		1,528,130	1,110,500	540,150		98,800	1,287,950	48,840	769,800	209,310		99,500	160,500
7월	14,696,170	8,989,040		1,528,130	1,100,500	130,240		1,540,000	1,408,260	12,000	241,960	197,750		58,550	898,000
8월	12,697,900	9,139,040		1,565,030	1,100,500			86,900	806,430	155,000	203,300	240,930		95,200	112,000
9월	16,608,480	9,139,040		1,565,030	1,100,500	120,400		3,733,500	950,010	28,000	109,800	336,510	121,000	284,700	70,000
10월	17,078,640	9,139,040		1,565,030	1,100,500	4,140,700		329,000	804,370	87,540	120,640	406,540		119,650	70,000
11월	13,686,700	9,139,040		1,565,030	1,100,500		908,500	51,500	922,130	20,500	42,500	299,930	120,000	347,600	91,600
12월	25,040,960	9,139,040	5,000,000	1,565,030	1,100,500		3,768,500	3,586,050	881,840	180,570	38,100	308,770		264,400	90,000
총계	186,114,360	108,233,780	5,000,000	19,035,010	13,266,000	6,501,790	4,677,000	17,191,630	12,209,150	837,020	2,230,620	4,199,950	571,500	2,370,960	1,999,100
재단 지원						14,700,000									

3. 2015 예산

月 수입기준	年 수입 기준	계정과목	月 지출기준	年 지출 기준
10,800,000	129,600,000	회비		
3,200,000	38,400,000	후원금		
2,250,000	27,000,000	사업비지원		
1,500,000	18,000,000	프로젝트지원		
250,000	3,000,000	잡수입		
		급여-상근활동가 4인 (퇴직급여, 4대보험 포함)	10,600,000	127,200,000
		복리후생비	1,550,000	18,600,000
		회원사업	700,000	8,400,000
		프로젝트사업	1,550,000	18,600,000
		같이가치 공모사업	500,000	6,000,000
		운영비	1,350,000	16,200,000
		임차 및 관리비	1,250,000	15,000,000
		예비비	500,000	6,000,000
216,000,000		계	216,000,000	

<지출항목 산출근거>

급여 산출	
(활동가 4인 급여*12)+전진한 소장 2,3월분	87,200,000
퇴직금적립 5,000,000 + 소장 직책수당 6,000,000(500,000*12)	11,000,000
하반기신입활동가채용 6개월분	9,000,000
4대보험 12개월분	20,000,000
사업비 산출	
탈바꿈프로젝트	4,200,000
포이동	5,000,000
공터학교	3,400,000
정보공개소송	6,000,000
회원사업비 산출	
정기총회	1,500,000
후원의밤	5,500,000
신입회원모임2회	500,000
방바닥영화제(9회*10만원)	900,000
같이가치 공모사업	
정보공개청구 사업진행 단체 및 신생단체 지원사업 (2회*300만원)	6,000,000
임차및관리비 산출	
임차비 (110500*12)	13,326,000
전기요금	1,674,00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2008.10.09 (제정)
2009.03.26 (개정)
2010.04.23. (개정)
2013.02.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단체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단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 한다. 영문 단체명은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이라 한다.

제3조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캠페인
2.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3.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
4.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단체의 정관 준수 및 회비의 납부
2. 본 단체에서 활동하는 각종 캠페인 참여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4.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의 수령
6. 기타 본 단체의 제안 사업에 대한 참여

제6조 (회비)
① 회비는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7조 (탈퇴)
본 단체의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본 단체의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4인 이내
2. 이사 30인 내외
3. 감사 2인
4. 소장 1인
5. 자문위원 30인 내외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4인 이내 2. 고문 10인 내외 3. 운영위원 30인 내외 4. 정책위원 10인 내외 5. 감사 2인 6. 소장 1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1년
2. 이사 2년
3. 소장 1년
4. 감사 2년
5. 자문위원 2년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3년 2. 운영위원 3년 3. 정책위원 1년 4. 감사 3년 5. 소장 3년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와 소장을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와 소장을 선출한다. ④ 정책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대표, 이사, 소장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장은 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대표 유고시 이사 중에서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소장의 유고시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표, 운영위원, 정책위원, 소장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장은 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고문은 본 단체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⑤ 정책위원은 본 단체의 활동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지원한다. ⑥ 대표 유고시 운영위원 중에서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소장의 유고시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단체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3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단체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 단체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 단체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와 감사의 서명 후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표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② 이사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와 감사의 서명 후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이사 자신에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표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운영위원 자신에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정책위원회

제26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정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사무국

제26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간사를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은 이사회에서 하고, 상근간사의 임명은 소장이 한다.

제7장 사무국

제27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활동가를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근활동가의 임명은 소장이 한다.
④ 사무국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정)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ㆍ처분한다.

제30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1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3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단체 창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경과조치)
①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부칙

제32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 (경과조치)
①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